

#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미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2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「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」에 맞도록 정비(안 제1조, 제4조)
- 다.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(안 제2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. 5. 31. ~ 2018. 6. 11. (12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관련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도시정책과**

##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미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·  
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·  
운영조례”를 “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  
시 특별회계 설치·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국  
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, “동법시행령(이하 ”영 “이라한다)를  
“동법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 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  
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 
연장 할 수 있다.

제4조제1호 중 “법 제47조”를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 
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”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도시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도시과장
	팀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팀장 최용헌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서병덕 (790-5212)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는 <u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4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</u> ----- -----<u>동법시행령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  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</u> 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<p>제4조(용도)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. 1. <u>법 제47조에</u>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(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 2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용도) ----- ----- 1. <u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47조</u>----- -- 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